

〈第1回〉環境保全에 관한 학술논문 銀賞 당선작

先進祖國建設을 위한 環境保全 方案

崔 仁 和

〈충남 조치원中 교사〉

目 次

- I. 序 言
- II. 先進祖國과 環境保全
 - A. 先進祖國의 理念
 - B. 環境保全의 時代的當爲性
- III. 새로운 「自然開發觀」의 定立
 - A. 自然에 대한 人間의 責任
 - B. 環境保全과 「Small is beautiful」
- IV. 環境保全을 위한 方案模索
 - A. 能動的인 環境教育의 實施
 - B. 매스컴에 의한 弘報
 - C. 關係機關의 活性化
 - D. 環境權行使를 통한 法的保障
 - 1. 環境權의 憲法的 理念
 - 2. 環境保全을 위한 制度和 救濟策
 - E. 環境保全과 經濟政策
- V. 結 語
- ※ 參考文獻

I. 序 言

이제 先進祖國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삶의 터전인 人間環境(Man's environment)의 問題認識에 보다 냉철한 自己批判과 현명한 解決方案을 모색해야 하는 時點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先進祖國의 理想이 人間의 삶의 質(Quality of life) 과 풍

요로운 삶의 機會(Chance of affluent life)를 확보하는 福祉國家의 理念과 부합되기 때문이며 진정한 社會發展이란 것은 人間의 物質的 豊饒와 함께 安定된 精神的 健康을 누릴 수 있는 環境의 福祉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찌기 인도의 詩聖 Tagore가 말한 바처럼 “人間은 自然속에서 生을 얻었다. 故로 自然은 人間의 어머니이다. 人間은 自然의 품속에 안겨서 自然의 攝理에 順應하며 살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人間의 속성이 自然環境과의 不可分性 즉 生態系(Ecosystem)를 벗어날 수 없는 有限的 存在임을 깨닫게 하는 말이다. 人間과 自然과의 關係는 有史 이래로 흔히 服從·調和·征服의 關係가 複合的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否認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히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祖國近代化라는 大前提下에 집중적인 高度經濟成長의 追求에 몰두한 나머지 生態系秩序를 위협하는 自然環境의 汚染·破壞現象을 초래하고 말았다. 經濟成長의 論理는 단기적으로 볼 때 物質的 豊饒를 위한 것이어야 하나 장기적으로는 人間의 價値와 尊嚴性에 상응하는 「生活의 質(Quality of life)을 얼마나 윤택하게 하여 주었는가」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며 이런 意味에서 經濟發展의 質의 側面을 중시하는 것으로 부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人間다운 生活空間의 確保라는 點에서 福祉國家(Welfare state)의 建設에 기여할 수 있는 效果的인 環境

保全方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동안 環境保全法을 새로 제정하여(1977年) 從來의 公害防止法에 未備되었던 여러가지 原則과 制度等—汚染總量規制, 環境影響評價制度, 汚染者負擔의 原則, 無過失責任制度等—을 규정하고 同年 10월부터는 汎國民의인 自然保護運動을 전개하는 한편 1978年 10月 5日에는 自然保護憲章도 宣布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自然과 環境保全을 위한 법국민운동은 先進祖國을 지향하는 현실점에서 意識改革의 次元으로 昇華시키는 한편 그 具體的이고도 妥當한 保全方案도 모색하여 우리들의 快適한 環境造成은 물론 後孫들에게 까지 아름답고 건강한 自然環境을 물려줄 수 있어야 겠다.

本稿는 先進祖國建設을 위한 環境保全 方案을 考察함에 있어 環境保全의 時代的當爲性을 살핌과 함께 새로운 「自然觀」을 모색하여 「人間의 自然에 대한 責任性」「自然의 價値와 權利」라는 측면을 부각시켜 보려했고 環境保全의 具體的 方案에 있어서는 「環境教育」이라는 事前的이고 能動的인 方法을 비롯하여 現行 第五共和國憲法에서 새롭게 규정된 「環境權」에 유의하여 法制度 및 經濟政策등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보고자 하였다.

II. 先進祖國과 環境保全

A. 先進祖國의 理念

先進祖國은 經濟·社會發展의 결과 얻어진 물질적 풍요와 함께 정신적인 삶의 質을 고르게 추구하는 社會로써 「國民 各者가 원하는 삶의 기쁨, 人生의 幸福, 文明된 社會生活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며 살 수 있도록 制度的으로 保障된 社會로써 産業化·近代化의 便益과 果實이 有產者·特權者등 어느 일부 계층에 독점됨이 없이 社會의 各계各층의 사람들에게 골고루 확산되고 享受되는 社會」¹⁾ 를 뜻하는 것으로서 國家는 福祉國家의 성격을 띠게 된다. 우리나라 憲法의 基本原理중의 하나로서 人間다운 生活의 實現을 추구하는 福祉國家의 原理가 내포되어 있음은 물론이다.²⁾

그리하여 國家는 國民이 「人間다운 生活」과 「健康하고 文化的인 環境」을 享有할 수 있도록

福祉社會建設을 위한 外面的·環境的·物質的 側面의 向上을 강구해야 될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 된다. 특히 「環境權」에 대한 憲法的保障이 明文化되면서³⁾ 快適한 生活空間確保問題, 自然環境의 保全과 開發의 問題가 각광을 받게 되었으며 60年代 이후 高度産業社會建設의 後유증으로 환경오염과 公害(Public Nuisance)의 처리는 福祉社會가 이룩되는가를 결정짓는 核心的 課題로 提起되기에 이른 것이다.

B. 環境保全의 時代的當爲性

人間의 歷史 특히 西歐文明의 歷史는 自然征服의 歷史라고 할 수 있으리만큼 自然環境에 대한 人間의 도전과 개발은 人間中心的 思考方式을 벗어나지 못하고 급기야 生態系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본래 生態系는 스스로 相互間에 밀접한 의존성과 관계성을 맺고 調和를 이루어 恒常性(Homeostasis)을 유지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人間도 生態系를 구성하는 一員으로서 지속적인 발전과 생존을 위해서는 生態系에 調和되고 그 法則에 順應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18세기 産業革命을 계기로 급속한 科學技術의 發展과 機械文明의 形成은 광범위하고도 지속적인 自然環境利用과 開發을 極大化시켜 왔고 그 결과 生態系는 公害와 環境汚染속에 異常現象을 낳게되었고 人間의 生活環境自體가 위협받게 되었다.⁴⁾

여기에 人口의 폭발적 증가는 食糧과 生産品의 대량생산·소비를 가져 왔으며 自然資源에 대한 수요를 급증시켰고 이것의 결과로 自然環境의 破壞와 廢棄物의 量産은 環境汚染을 유발하여 각종 질병을 증가시키고 있다. 日本의 경우 1953년 九州地方 熊本縣 水保市에서 汚染된 魚貝類를 섭취하여 발생했던 미나마타病이나 1960年 日本政府가 公害病으로 인정하게된 富山縣 神通川流域의 카드뮴 중독증인 이따이이따이病등은 그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⁵⁾

그런데 어느 정도의 環境汚染은 自然의 풍부한 自淨能力에 의해서 消失될 수 있지만 自然環境 그 자체가 破壞되어가는 狀況에서는 自淨能力도 기대할 수가 없다고 보며 農藥과 重金屬, P.C.B 등과 같은 蓄積·殘留性汚染物質(Ecotoxins)은

水質汚染에 그치지 않고 河川이나⁶⁾ 海岸의 生物이나 底土質에 吸收蓄積·濃縮되어 長期的 被害까지 가져오게 된다.⁷⁾ 예컨대 化石연료(석탄·석유 天然 gas 등)의 소비로 인한 아황산 gas (SO₂) 에 의한 酸性化된 비의 강하로 토양이 산성화되거나 쇠붙이등의 산화를 촉진시켜 궁극적으로 각종 토양과 地表面의 물의 산성화로 人間에 피해를 주게될 수 있고 대기오염과 Smog 현상으로 인한 公害病이 장기간에 걸친 만성질환의 형태로 成人病에 나타나고 있으며 인체에 흡수된 대기의 오염물질이 체내의 효소나 세균과 작용하여 有毒性 物質을 發生시켜 암계통질환의 70% 이상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⁸⁾

이리하여 機械文明의 發展은 比例的으로 環境破壞를 낳게되고 그 결과는 人間에게 害를 끼치는 지경에 이르자 各國은 各種特別法規를 制定하여 自然環境의 보호와 보전을 힘쓰게 된 것이다.

福祉社會建設을 위한 「環境權」이 法的權利로서 性格을 인정받게 된것은 1970년 3월 東京에서 國際社會科學評議會의 環境破壞常設委員會의 主權로 있는 國際會議에서 「人間的 環境은 그 性格·內容으로 보아서 모두 일체적인 관련성을 지닌 것으로서 그것을 損傷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간에 物的破壞의 原因이 될뿐만 아니라, 社會組織의 破綻, 心理的인 惡影響 및 文化의 혼란을 招來할 可能性이 있고 따라서 모든 사람이 福祉와 관련이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사람이 자는 누구이든 健康이나 福祉를 侵害받는 要因에 禍를 입지 아니하는 環境을 누리는 權利와 장래의 世代에게 現在의 世代가 남겨야 할 遺産인 自然美를 포함한 自然資源을 보존하는 權利를 基本的人權의 하나로 가진다고 하는 法原則을 法體系속에 확립하려고 하는 바를 우리들은 要請하는 바이다」라는 宣言文으로 볼 수 있다.⁹⁾

이후 「環境權」(Environmental right)의 法的 權利化가 이루어져 西獨基本法 (§74의 24), 美國의 國家環境政策法(The National Environment Policy Act:1970年), 日本의 公害對策基本法과 自然環境保全法등이 各國에서 制定되었는데 美國의 國家環境政策法 제 10 조(b)에서는 聯邦

政府의 一貫된 政策으로서 「各世代가 그후 世代를 위하여 環境의 受託者로서 責任을 다할 수 있게 한다」 「모든 美國人의 安全·健康이 生産의 이고 美的·文化的으로 만족할 수 있는 環境을 保障한다」에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¹⁰⁾

우리나라의 경우도 60年代 以後 産業化에 따른 公害와 環境汚染이 社會問題化되면서 環境保全의 必要性이 강조된 바 있고¹¹⁾ 1978年 7月 1日부터 施行되고 있는 環境保全法은 「環境을 適正하게 保全함으로써 國民保健向上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制定되기에 이른 것이며 이는 現行憲法 제 33 조에서 「모든 國民은 깨끗한 環境에서 生活을 할 權利를 가지며 國家와 國民은 環境保全을 위해 努力하여야 한다」는 環境權條項을 具體化하는 役割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制度的인 일련의 노력들은 環境保全이야 말로 人間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福祉環境의 必須條件이라는 時代的當爲性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Ⅲ. 새로운 「自然開發觀」의 定立

A. 自然에 대한 人間的 責任

人間의 幸福과 풍요로운 삶을 위해 自然이 利用할 수 있는 대상물, 그리고 심지어 人間의 能力을 시험하여 볼 수 있는 「끝없는 邊境」(Erelless Frontier)으로 여기면서 征服하여야 하던 것으로 알아 왔다. 따라서 人間文明의 歷史는 自然征服과 自然搾取의 歷史라고 까지 할 수 있다. 이것은 人口가 적었고 相對的으로 自然資源이 풍부하였던 時代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現在에 이르는 시기와 장래의 지금까지의 自然開發觀인 무계획적인 自然征服의 人間行動樣式은 더 이상 容납될 수 없게 된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우선 로마클럽의 유명한 報告書인 「成長의 限界」(The Limits to Growth)에서 볼 수 있는데 地球의 資源이 有限한 것이기 때문에 無謀한 開發은 통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自然環境이 經濟成長이나 開發에 대한 방해물이거나 壓力을 지닌 대상으로 나타나면 科學技術의 힘으로 그것을 打開해 나왔고 그것이 대부분 成功을 거두었으나 이제는 人間의 價値觀과 道德律이 再定立되지 않고는 미래의 문제해결

어렵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리하여 自然科學에 의한 技術의 解決이란 것이 問題의 徵兆를 除去할 수는 있으나 本質的인 原因에 作用할 수는 없다고 본다.¹²⁾

이는 실제로 自然環境汚染을 비롯한 환경 파괴·자원고갈등의 문제해결에 있어 技術의 System의 재편성과 함께 새로운 思想(價値 System)과 制度(社會 System)의 側面이 고려되어 同時並行的으로 問題解決을 위한 相互依存關係 및 優先順位등에 대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¹³⁾

그러면 自然環境은 人間의 征服對象이 아닌 調和 및 同伴者關係로 파악하려는 새로운 自然觀과 開發의 本質은 어떻게 認識하는 것이 타당한가?

첫째, 自然保全과 開發은 傳統的으로 理解되어 온 것과 같은 矛盾關係가 아니라는 점이다.

흔히 開發을 위해서는 保全이 희생되어야 하고 保全을 고집하면 開發이 진전되지 않는다고 여기고 있으나 開發과 環境保全이란 것은 모두 人間과 生態系의 調和 또는 그 궁극적 목적이 人間生活에 有益한 環境의 造成에 있다는 次元에서 重合點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開發을 하되 그 結果가 人間만을 위한 開發이어서 自然環境을 破壞하고 生態系를 전복시키는 것이라면 끝내는 人間마저도 피해를 입게되는 것이며 人間과 自然을 함께 포용하는 生態系의 保全對策이 강구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保全과 開發은 결코 相衡되는 것이 아니며 다만 短期的인 必要에 따른 開發이 長期的인 賢明(또는 洞察)을 바탕으로 하지 못했을 때 問題가 되므로 결국 時間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¹⁴⁾ 그러므로 自然保全과 開發의 調和는 長期的이고 綜合的인 生態系의 檢討와 開發計劃의 마련으로 찾을 수 있고 自然에 대한 開發을 平面的인 사고 방식이 아닌 時間과 空間모두를 고려한 有機的構成으로 接近하고 評價할 것이 요청된다.

둘째, 自然에 대한 價値觀이나 觀點(View-point)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다.

이것은 自然에 대한 觀點(또는 價値觀으로서의 自然觀)이 人間中心의 倫理的 基盤위에서 생각하고 평가하여 왔다는 것에 대한 反省이다.

현대의 自然保全이나 環境保全運動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도 基本的인 自然觀은 이제 自然環境이란 것이 한낱 人間生活의 外面的 條件이며 풍요로운 人間의 삶을 위한 道具나 手段의 價値를 지녔다고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오늘날 날로 기계화 되어가는 時點에서 人間以外的 動植物의 保護와 自然環境의 保全은 오랫동안 人爲的으로 科學技術의 적용이 잘못된 결과 나타난 環境破壞에 대한 人間의 責任이라는 점에서 당연할 뿐더러 이제는 과연 人間이 人間以外的 動植物의 「살 權利」 및 「種族保存의 權利」를 무시하고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일까가 문제된다. 西獨의 칼스루테大學의 哲學教授인 한스·랭크(Hans Lenk) 教授같은 이는 살아있는 모든 것, 즉 自然體系 그 自體에도 自己目的遂行에 대한 責任의 倫理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면서 이러한 自然의 自己目的追求는 동시에 自己存在를 유지하고 保存하는 準法(Quagirecht, Complying with thg law)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⁵⁾ 따라서 卓越한 人間만이 責任과 義務를 가진 目的的 存在로서 自然이나 生態系안에서 自己目的을 추구하는 유일한 主體일 수는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랭크教授는 法條文에 규정된 “정상참작(情狀參酌)”이란 뜻은 義務와 權利規定의 限界가 융통성이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정상참작”의 法理는 특히 自己權利主張을 스스로 할 수 없는 自然物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면 自然의 生存權은 特別한 理由없이 비록 人間이라 할 지라도 侵害되어서는 안되는 道德的 準權利로서 인정해 줘야 한다고 본다.

결국 人間은 自然環境에 대한 개발 및 변화를 기함에 있어서 自然이 가지는 價値와 存在保全의 權利를 人間의 責任性에 의거 信託하고 있다는 相互間의 관계내지 同僚關係에서 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⁶⁾

이러한 人間과 自然의 相對的 同僚關係 내지는 自然에 대한 人間의 責任을 자각하는 새로운 道德律에 입각한 自然觀은 人間을 만물의 영장으로서 洞察力을 가지고 自然環境의 攝理에 順應하도록 하여 주고 궁극적으로 가장 人間的인 선택 방법을 찾도록하여 주리라 믿는다. <다음 호에 계속>